

의안번호	2204554
의 퇴 인	주호영 의원
회 답 일	2024. 10. 17.
추 계 번호	24B42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의7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설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2호 ¹⁾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기준과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5조의7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5조의7 신설)

-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1회용 컵 등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사업자의 기준과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1) 안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다만, 다회용 컵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서는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사업자의 지정 등 제도 시행 여부와 보증금 대상 사업자의 기준 및 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향후 자원순환보증금제가 시행될 지역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지원 단가²⁾ 등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현행법에 따라 1회용품 보증금제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³⁾이며, 환경부에서는 2023년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선별인프라확충’⁴⁾ 사업을 통해 1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에 대해 지원한 사례가 있음

2) 무인회수기의 종류에 따라 설치 단가는 무인회수기 30백만원, 간이회수기 1백만원으로 나뉨

3)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부칙 제2조(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동 지역): 2022년 12월 2일

2. 제1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4) 2023년도 예산: 2억 2,500만원

[표 1]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선별인프라확충’ 사업 예산 현황(202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무인회수기 설치 계획 대수	국비	지방비	민간 자부담
세종특별자치시	8대	120	96	24
제주특별자치도	7대	105	84	21
합 계	15대	225	180	45

주: 1.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 신청한 예산 검토 결과, 무인회수기 설치 계획 및 단가(30백만원/대)에 맞추어 국고 지원액을 결정

2.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입 감소에 따라 당초 계획(10대)보다 축소(8대)하여 설치 추진

3. 2024년 예산 미반영

자료: 환경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1회용 컵 보증금제 추진 현황⁵⁾

□ 참여매장: 전체 773개 매장(66개 브랜드 ※자발적 참여매장 15개 포함)

○ 세종: 209개소(다회용, 캔 12개소 포함)

○ 제주: 564개소(다회용, 캔 48개소 포함, ※ 자발적 참여매장 15개 포함)

□ 반환량(2022.12.2~2024.9.30): 총 903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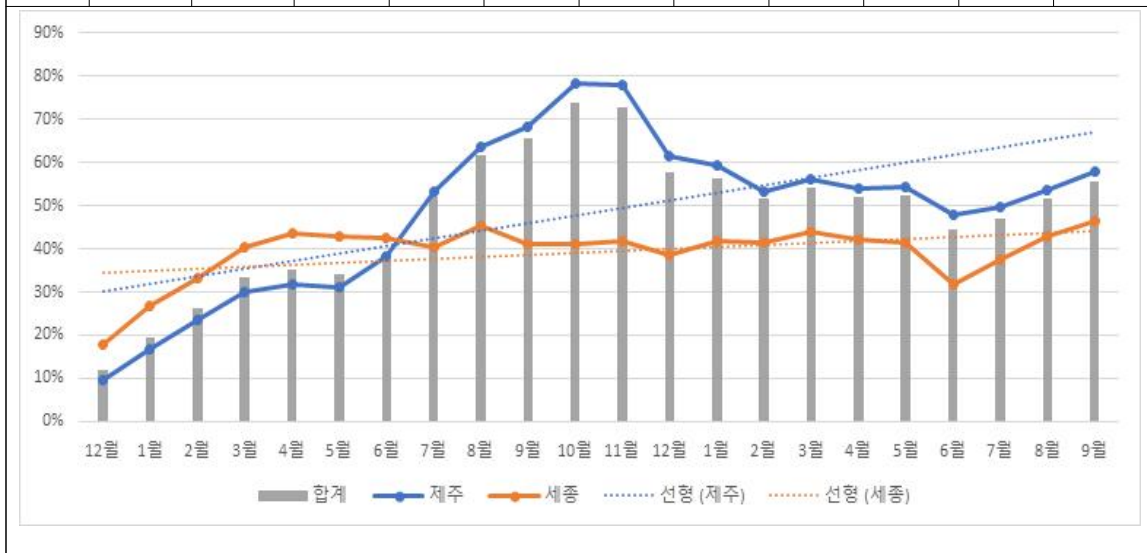
○ 일평균 반환량은 초기(2022.12.5.~12.11.) 2,464개/일 → 최근 (2023.9.23.~9.29.) 19,654개/일

□ 반환율: 49.3% (2023.7월 기준)

○ 전체 월간반환율은 2022.12월 11.9%에서 '23.10월 73.9%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별 반환율은 세종은 상승세 주춤, 제주는 최근 상승⁶⁾

(단위: 월, %)

구분	'22.12	'23.1~12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전체	11.9	47.6	56.5	51.5	54.2	52.2	52.2	44.5	47.1	51.6	55.4
세종	17.8	39.8	41.8	41.5	43.8	42.1	41.6	31.8	37.5	43.0	46.4
제주	9.6	47.9	59.4	53.4	56.2	54.2	54.2	47.9	49.6	53.6	57.8



주. 추후 데이터 수정(판매량 추가제출, 정정 등) 등 발생시 반환율 변동 가능

5) 환경부 제출자료

6)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23.6.7.부터 보증금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9건 부과)에 따라 참여율 및 반환율 상승

[참고자료 2] 1회용 컵 무인회수기 종류⁷⁾

 무인회수기	 간이회수기
--	---

- 무인회수기 vs 간이회수기: 매장 직원없이 소비자가 직접 컵 반납 및 보증금 반환 가능
 - 설치 가능 여부: 무인회수기는 가능, 간이회수기는 곤란
 - 컵 회수 완결성 : 무인회수기는 컵 자동 회수, 간이회수기는 컵 반납 선택
- (단가) 무인회수기 30백만원(장비, 설치비 등), 간이회수기 1백만원

7) 환경부 제출자료